

# 아산사회복지재단

138-73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/ (02)3010-2586 / FAX : 3010-8010 / 담당 : 남재우 대리

문서번호 : 아산(복) 제2014 - 1106호

시행일자 : 2014. 11. 10

수 신 : 서울대학교 총장

참 조 : 학생처장(장학담당)

제 목 : 2015학년도 '아산나래(SOS)장학생' 선발의 건

1.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재단은 부모의 사업실패·질병·재난·재해 등으로 학업을 중단 할  
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'아산나래(SOS)장학생' 을 선발하고 있습니다.

3.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며,  
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속 대학을 통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.

4. '아산나래(SOS)장학생 신청안내' 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학교  
홈페이지 공고 및 대학신문 기사 게재를 요청하며, 학생이 인터넷 접수(아산재단 지원  
신청서비스)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1) 장 학 금 : 등록금 전액
- 2) 지급기간 : 1년 다만, 성적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계속 지급여부 결정함.
- 3) 지급방법 : 학기별로 구분하여 소속 대학으로 송금함.
- 4) 지원기간 : 2014년 12월 1일(월)~5일(금)
- 5) 지원방법 : 인터넷 접수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(<http://welfare.asanfoundation.or.kr>)

별 첨 : 2015학년도 '아산나래(SOS)장학생 신청안내 ' 1부. "끝"

※ 안내문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

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 
이 사 장 정 몽 준



# 2014 학년도 ‘아산나래(SOS)장학생’ 신청안내

## 1. 자격요건

- 1) 부모의 사업실패 · 질병 · 재난 · 재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
- 2) 아산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3) 신규학기에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진학이 예정된 학생
- 4)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.5/4.5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 이후 계속 유지하는 학생
- 5) 신규학기에 타 기관의 장학금 수혜 대상이거나 보호자의 직장에서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함.

## 2. 신청서 작성

### 1) 인터넷 작성

- ① 지원신청서
- ② 자기소개서 : 사연을 구체적으로 작성

### 2) 구비서류(스캔 후 파일첨부)

- ① 학교추천서 : 담당교수에게 추천서를 받고, 학교장학담당자의 확인(직인)을 받음.
  - ② 직전학기 성적증명서
  -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- ④ 재산 및 소득관련 증빙 서류
    - 재산세 관련 :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(과세내역이 없을 경우도 제출함)
    - 소득세 관련
      - 부모님이 직장을 다닐 경우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장에서 발급)
      - 부모님이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: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, 인터넷 발급)
      -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: 사실증명서(세무서 발급)
-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자 증명서만 제출

## 3. 접수기간 및 방법

- 1) 접수기간 : 2013년 12월 26일(목) ~ 30일(월)
- 2) 접수방법 :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함.
  - ※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 : [welfare.asanfoundation.or.kr](http://welfare.asanfoundation.or.kr)
  - 매뉴얼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지 예정
- 3) 문 의 : 장학담당 (TEL 02-3010-2586, 2563)

#### 4. 장학생 의무사항

- 1)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나눔문화 체험
- 2) 아산장학생 만남의 장(울산산업체 견학) 참여
- 3) 아산재단 행사(장학증서수여식, 심포지엄 등) 참여
- 4) 아산장학생 모임 '정담회' 활동(농촌봉사활동, 체육대회 등) 참여

#### 5. 장학생 결격사유

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규학기 장학생에서 제외됨.

- 1) 2회 연속 성적이 미달된 학생(기준 : 3.5/4.5 이상)
- 2) 제적, 정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- 3) 휴학, 군입대, 질병, 기타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
- 4) 기타 재단 장학사업의 취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

#### 6. 장학금 지급

- 1) 장 학 금 : 등록금 전액
- 2) 지급기간 : 졸업시 까지 (학기별 심사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, 최대 4학년까지 지급)
- 3) 지급방법 : 소속 대학으로 송금(학기별 분할지급)